원고3

서울 노원구 공릉2동
349-10
이호형

2089944412105 139-242
2 0 8 9 9 4 4 - 4 1 2 1 0 5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15민사부

준 비 명 령

사 건 2003가합 5348

원고1 양견
원고2 김재진
원고3 이호형

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.

동봉한 상대방의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**2003. 6. 3. 까지**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2003. 5. 13.

등본입니다.
법원주사 박성묵

재판장 판사 · 배 기 열 (인)

◇ 유 의 사 항 ◇

1.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,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주요 서증에 대해서는 인부의 의견(성립인정,부인,부지 등)을 밝혀야 합니다.
2.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다음 요령에 따라 함께 제출 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 ① 서증신청 : 서증사본 및 이에 대한 증거설명서 제출
   ② 증인신청 : 증인의 이름 · 주소 · 연락처 · 직업, 증인과 원 · 피고와의 관계,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『증인신청서』제출
   ③ 검증 · 감정 · 사실조회 ·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: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 제출

※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(download) 할 수 있습니다.
(www.scourt.go.kr => 알기 쉬운 소송 => 증거신청)

3.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며,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(민사소송법 제149조 참조).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대구지법 제15민사부 법원주사 박성묵
직통전화 : 757-6452
팩 스 : e-mail :